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신고요령

Ⅰ 개 요

□ 실시근거

○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7조
○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 및 제56조
○ 「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지침」 제10조 및 제13조

□ 신고가능 실적

○ 2024.01.01 ~ 2024.12.31 기간 동안 신규로 수주(계약체결)한 엔지니어링 사업
※ 공공·민간 실적 및 국내·해외 실적 모두 신고

< 엔지니어링 사업 >

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, 기획, 타당성 조사, 설계, 분석, 구매, 조달, 시험, 감리, 시운전, 평가, 자문, 지도,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에 대한 사업 **(※ 단순 시공은 엔지니어링 활동이 아님)**

*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실적만 신고 가능하며, **전문분야 신고일 이후에 신규 계약한 용역만 신고 가능**

- 기등록 실적의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**변경신고**로 진행

□ 신고방법

○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(www.etis.or.kr) 접속 →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민원(오른쪽 상단 메뉴) → 실적관리 → 수주실적 신규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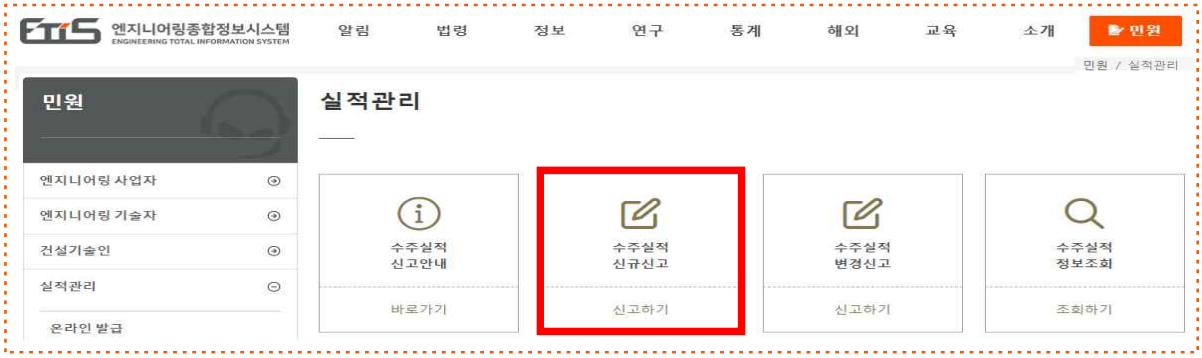

* **증빙자료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** (※ 우편송부 불필요)

○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, **'수주 실적 없음' 서식**을 작성후 직인 날인 하여 **팩스(02-3019-3357) 송부**

Ⅱ 수주실적 신규 신고 방법

1. 신규 신고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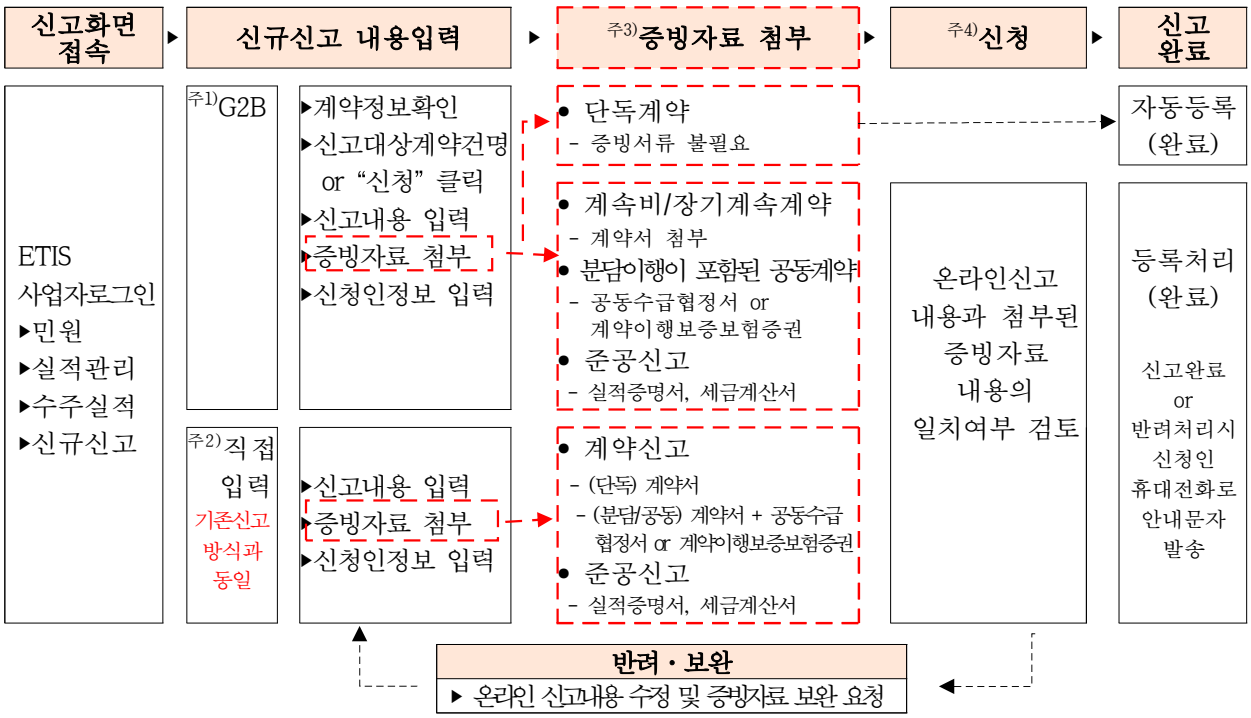

주1) 나라장터 계약정보로 엔지니어링사업 수주실적을 신고하는 경우 "미신청탭"의 계약정보 중 반드시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 계약건을 선택하여 신고

- ㅇ 조달청 분류기준에 따른 기술용역 계약정보 모두 게시
- ㅇ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실적으로, 전문분야신고일 이후에 신규 계약한 용역만 신고 가능

주2) 나라장터 계약정보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직접 입력하여 신고

주3) 증빙서류는 PDF파일(용량 5MB이하, 최대 2개)로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(※ 우편송부 불필요)

- ㅇ **나라장터 계약정보로 신고한 단독계약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**
  - 계속비/장기계속계약의 경우 : 계약서 첨부
  - 분담 또는 공동계약의 경우 :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
  - 준공신고의 경우 :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
- ㅇ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

주4) 나라장터 계약정보로 신고한 단독계약의 경우 내용 검증없이 자동 등록처리됨

주의 자동등록처리 후 변경사항 발생시 수주실적 변경신고 하여야 함.

2. 신규 신고 화면설명

① 미신청 : 나라장터 기술용역 계약정보 현황

② 신　청 : 등록처리 되지 않은 수주실적 신고현황

③ 반　려 : 반려처리된 수주실적 신고현황

④ 완　료 : 자동등록처리 되었거나 신고내용 검증 후 등록처리된 실적현황

⑤ 취　소 : 나라장터 계약정보 중 사업자가 목록에서 제외한 계약정보

⑥ 직접입력하기 :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실적에 대해 직접입력

⑦ 계약번호로 가져오기 : 나라장터 계약정보 중 조회되지 않는 실적

3-1. 신규 신고 방법 (나라장터 계약정보 연동하는 경우)

□ (1단계) 신규 신고 대상 계약정보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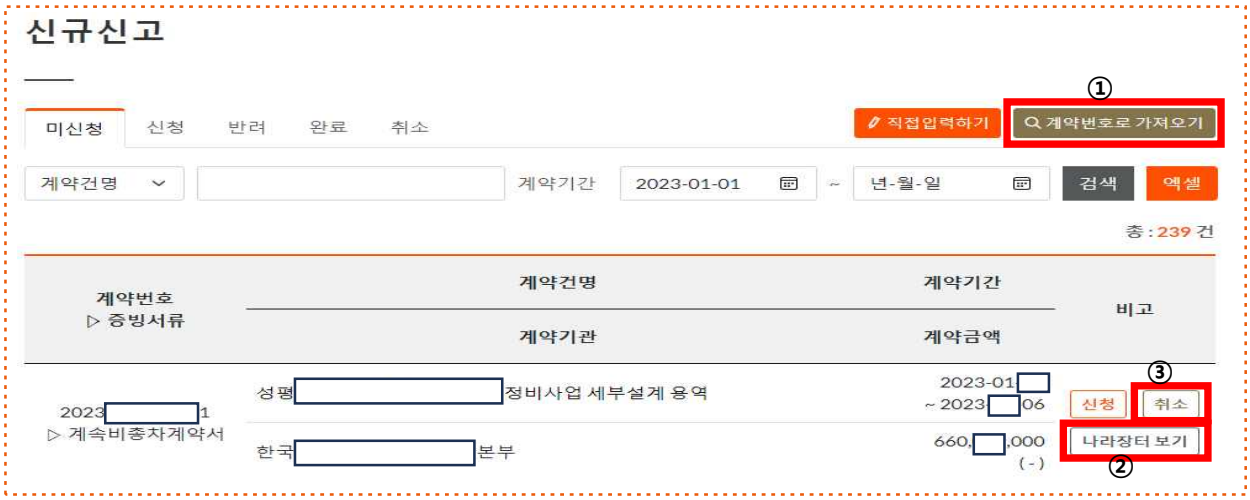

○ 미신청탭에 게시되어있는 나라장터 계약정보 중 신고 대상 계약건명 클릭 또는 “신청” 을 클릭하여 신고 진행

① 계약번호로 가져오기 : 나라장터 계약서의 계약번호로 조회하여 신고 가능

② 나라장터보기 : 나라장터 계약정보의 상세내용 조회 가능

③ 취소 : 나라장터 계약정보 중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 건을 목록에서 제외

□ (2단계) 신규 신고 내용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

○ **자동반영항목** : 계약번호, 장기계속구분명, 계약건명, 계약방법, 공동계약여부, 계약기간, 총계약금액, 발주청

○ **직접입력항목** :

- (필수입력) 도급구분, 당사지분금액, 전문분야, 시설물유형, 업무범위

① (필수) 도급구분 : 원도급 또는 하도급 선택

② (필수) 당사지분금액 : (공동 또는 분담 계약으로 당사지분금액을 기재한 경우)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 첨부

③ (필수) 전문분야 : 대표 전문분야 1개만 선택

④ (필수) 시설물유형 : 대표 시설물유형 1개만 선택

· 과업을 수행하는 대상물의 상위 개념인 시설물을 선택

· 적용할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시설물의 기타를 선택

* 시설물 유형 추가를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(www.etis.or.kr) 민원-묻고답하기 (기능개선) 항목을 통해 추가 요청하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추가 예정이며 추후 변경 가능

⑤ (필수) 업무범위 : 1가지 필수 선택, 복수선택 가능

· **단, 컨설팅업의 경우 3가지(연구, 자문, 지도)**만 선택 가능하며 이외 업무는 실적 신고 불가

- **(선택입력)** 사업유형, 사업개요

⑤ **(선택)** 사업유형 : 복수선택 가능

· 필요시 각 사업유형별로 금액 입력이 가능하며, 입력된 전체 사업유형별 합계금액이 총 계약금액(당사지분금액)을 넘을 수 없음

※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실적증명서, 과업지시서 등)를 첨부해야함

* 사업유형 추가를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(www.etis.or.kr) 민원-묻고답하기 (기능개선) 항목을 통해 추가 요청하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추가 예정이며 추후 변경 가능

⑥ **(선택)** 사업개요 : 복수선택 가능

· 필요시 사업개요 내용 입력 가능

※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실적증명서, 과업지시서 등)를 첨부해야함

* 사업개요 추가를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(www.etis.or.kr) 민원-묻고답하기 (기능개선) 항목을 통해 추가 요청하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추가 예정이며 추후 변경 가능

o **(증빙서류) : PDF파일 5MB이하, 최대 2개까지 파일 첨부**

- **나라장터 계약정보로 신고한 단독계약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**

주의 나라장터 계약정보로 신고한 단독계약의 경우 내용 검증없이 자동 등록처리되므로, 자동등록처리후 변경사항 발생시 수주실적 변경신고 하여야 함.

· 계속비/장기계속계약의 경우 : 계약서 첨부

· 분담 또는 공동계약의 경우 :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

- 선택항목인 사업유형, 사업개요 입력시 : 실적증명서, 과업지시서 등 첨부

- 준공실적 신고시 :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

3-2. 신규 신고 방법 (직접입력) *나라장터 계약정보 활용이 불가한 경우

□ (1단계) 신규 신고 대상 계약정보 선택

○ **직접 입력하기** :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 직접 입력하기 선택

□ (2단계) 신규 신고 내용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

○ **(필수) 계약건명** :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명 기재

○ **(필수) 계약방법** : 일반경쟁, 제한경쟁, 지명경쟁, 수의계약 중 선택

○ **(필수) 계약기간** :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(또는 착수일과 준공일)

-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: 착수일자로부터 준공일자까지 기재
- 착수일자가 없는 경우 : 계약일자로부터 준공일자까지 기재
- 준공일자가 없는 경우 : 계약일자 해당년도 12월 31일을 준공일자로 하여 기재
- 착수일로부터 00일로 명시되어있는 경우

· 착수일을 계약 시작일로 입력하고 착수일 기준 날짜를 계산하여 종료일을 입력

<예시①>

- 계약기간 : 2024.02.01.부터 과업종료시까지
- 입력날짜 : 2024.02.01. ~ 2024.12.31.

<예시②>

- 계약기간 : 2024년 04월 ~ 2024년 10월 (계약 월만 명시된 경우)
- 입력날짜 : 2024.04.01. ~ 2024.10.31.

○ **(필수) 공동계약여부** : 계약이행방식 기준으로 작성

- **단독** :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상의 계약금액을 입력
- **공동** : 공동 이행인 경우(총 계약금액과 당사지분금액 모두 입력)
- **공동 + 분담** : 둘 다 해당되는 경우(총 계약금액과 당사지분금액 모두 입력)
- **분담** : 분담 이행인 경우(총 계약금액과 당사지분금액 모두 입력)

○ **(필수) 도급구분** : 원도급 또는 하도급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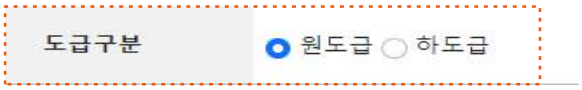

○ **(필수) 계약금액**

- **(국내)** :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, 원 단위까지 입력(숫자만 입력 가능)

· 시공이 포함된 턴키 계약의 경우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력

* 해당 엔지니어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견적서, 설계 내역서 등) 첨부

- **(국외)** : 국외 수주실적을 신고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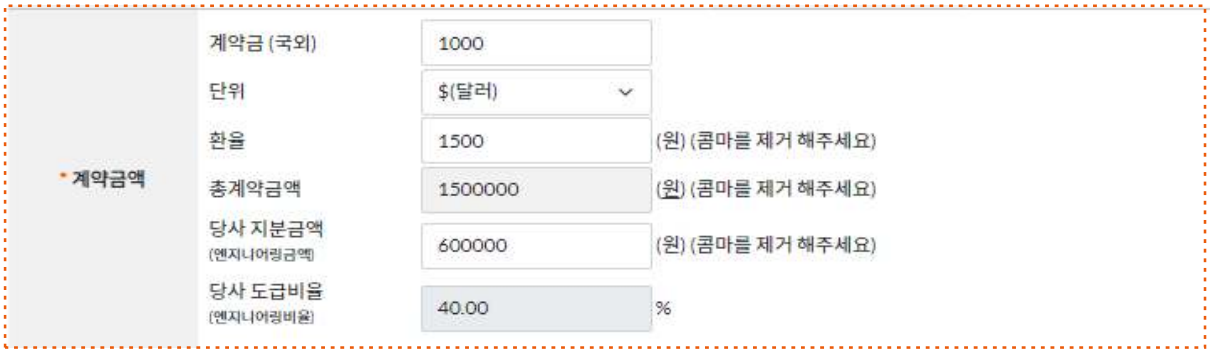

· 발주청에 국외를 선택, 국가명을 선택

· 직전 발주청 기준 해당 발주청이 속한 국가를 기준으로 발주국가 선택

<예시>

- 원발주청(A사, 베트남), 도급사(B사, 한국), 하도급사(C사, 한국)
- (B사가 신고시) 발주청 A사, 국외 실적, 발주국가 베트남 선택
- (C사가 신고시) 발주청 B사, 국내 실적, 발주국가 한국 선택

- 계약금액과 해당 금액의 화폐단위를 선택

  * 원화 환율표의 환율을 입력하면 총 계약금액이 원화로 자동 계산

- 국외 수주계약은 기본적으로 USD 기준으로 계약금액 입력

- €(유로), £(파운드), ¥(엔), ￥(위엔)의 고유 화폐를 사용한 계약 또는 ₩(원)으로 계약한 국외 수주계약의 경우는 해당 화폐 단위 사용

- 국외 수주계약은 첨부서류로 **원화 환율표를 반드시 첨부**

○ **(필수) 발주청** : 발주자를 기준으로 선택(하도급 계약의 경우 직전 발주자를 입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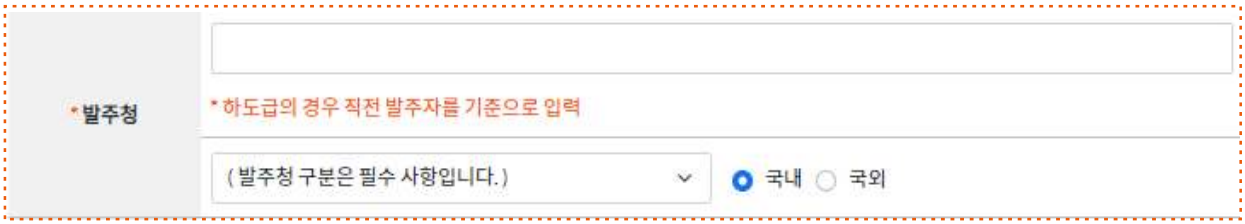

<예시>

- 원발주청(A사), 도급사(B사), 하도급사(C사)
  - (B사가 신고시) 발주청 A사 입력, 원도급 선택
  - (C사가 신고시) 발주청 B사 입력, 하도급 선택

○ **(필수) 전문분야** : 주된 전문분야 1개만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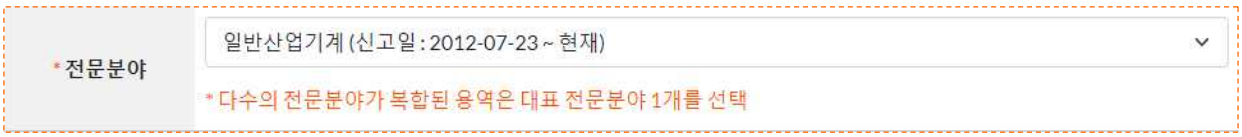

- 신고하지 않은 전문분야의 실적은 신고불가

- 전문분야 신고일 이후 수주한 실적만 신고 가능(단, 신고 유지기간일 경우)

○ **(필수) 시설물유형** : 주된 시설물 1개만 선택

- 과업을 수행하는 대상물의 상위 개념인 시설물을 선택

- 적용할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시설물의 기타를 선택

  * 시설물 유형 추가를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(www.etis.or.kr) 민원-묻고답하기 (기능개선) 항목을 통해 추가 요청하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추가 예정이며 추후 변경 가능

○ **(필수) 업무범위** : 복수선택 가능

- **단, 컨설팅업의 경우 3가지 (연구, 자문, 지도)**만 선택 가능하며 이외 업무는 실적 신고 불가

○ **(선택 사항) 사업유형** : 복수선택 가능

- 필요시 각 사업유형별로 금액 입력이 가능하며, 전체 합계금액이 총 계약금액(당사지분금액)을 넘을 수 없음

※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실적증명서, 과업지시서 등)를 첨부해야함

* 사업유형 추가를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(www.etis.or.kr) 민원-묻고답하기 (기능개선) 항목을 통해 추가 요청하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추가 예정이며 추후 변경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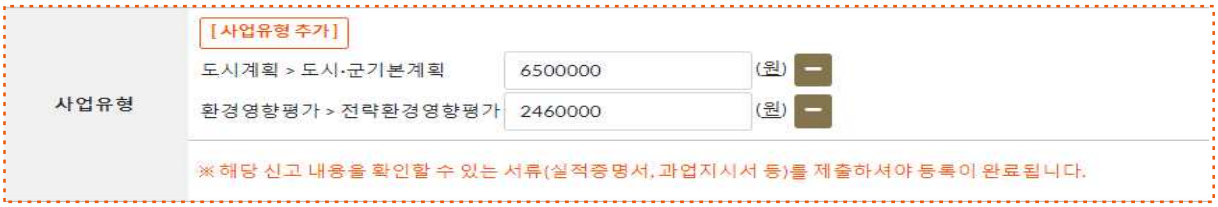

○ **(선택사항) 사업개요** : 복수선택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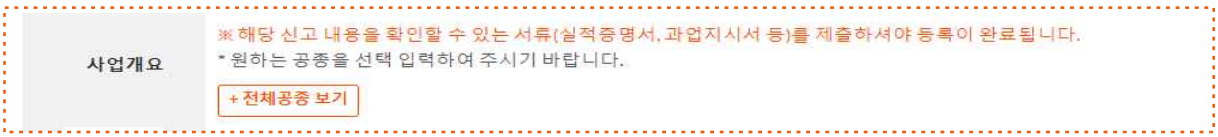

※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실적증명서, 과업지시서 등)를 첨부해야함

* 사업개요 추가를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(www.etis.or.kr) 민원-묻고답하기 (기능개선) 항목을 통해 추가 요청하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추가 예정이며 추후 변경 가능

○ **(필수) 증빙서류** : 전자파일로 첨부(PDF파일 , 5MB이하 파일 2개까지, **※우편송부 불필요**)

- 계약실적 : 계약서

  * 분담 또는 공동계약의 경우 :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추가 첨부

- 준공실적 : 실적증명서 + 세금계산서 첨부

- 국외 사업 신고시 : 원화 환율표 추가 첨부

- 사업유형, 사업개요 입력시 : 실적증명서, 과업지시서 등 추가 첨부

Ⅲ 수주실적 변경 신고 방법

1. 변경 신고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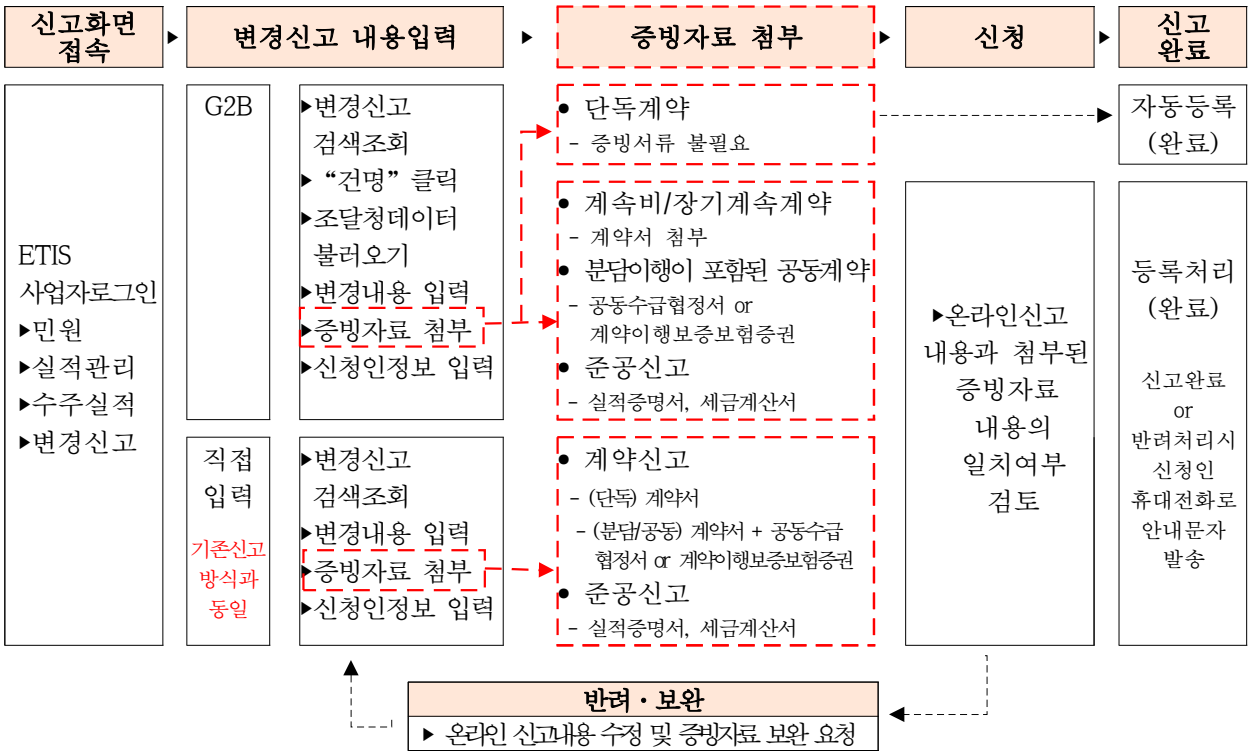

2. 변경 신고 방법

□ (1단계) 변경 대상 계약정보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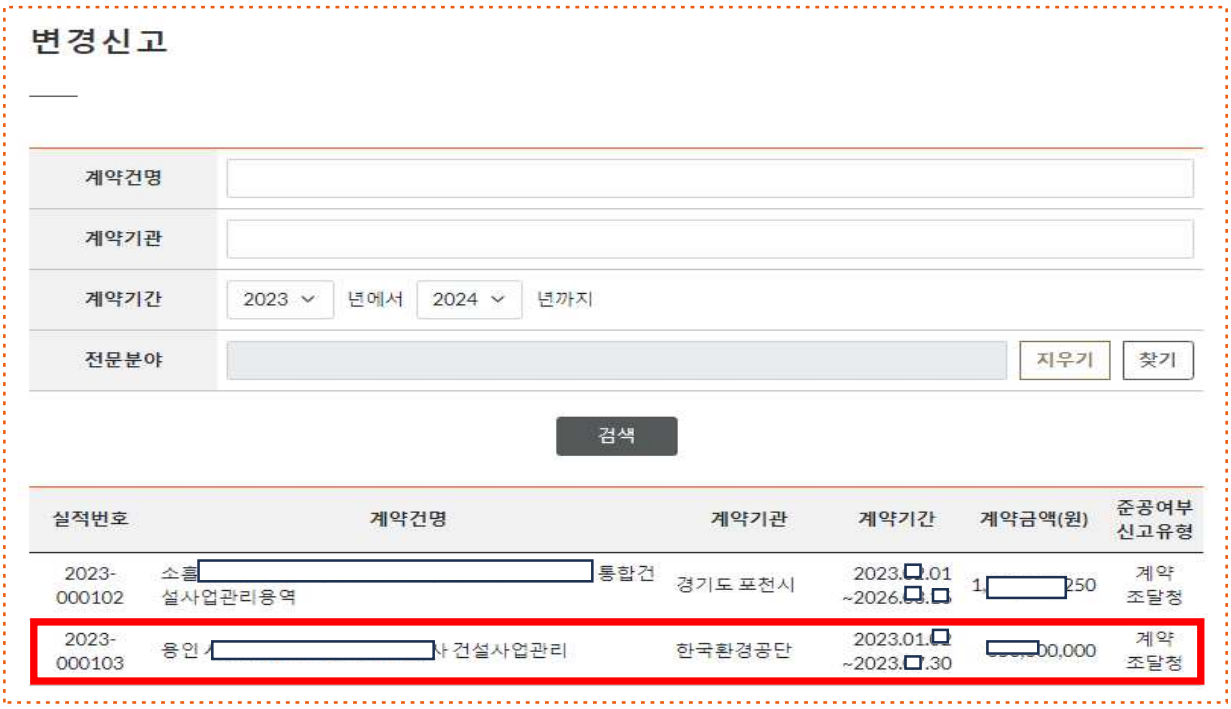

□ (2단계) 변경 신고 내용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(5MB이하, 최대2개)

○ 변경정보 : 자동 반영된 나라장터 연계 정보를 확인, 또는 변경사항 직접 입력

- 사업명, 계약방법, 공동계약여부, 기간, 금액, 발주청, 업무범위, 준공여부 수정 가능
- 하도급의 경우 원발주청이 아닌 직전발주자 기준으로 작성

○ 증빙자료 첨부 **(※ 우편송부 불필요)**

- **계속비, 장기계속계약을 총차로 신고하는 경우** : **'계약서'** 와 당사지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**'공동수급협정서'** 또는 **'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'** 을 첨부
- **준공으로 신고하는 경우** : **'실적증명서'** 및 **'세금계산서'** 온라인 첨부

○ 기존 신고건에 시설물유형이 반영 안된 경우 변경신고때 필수로 입력해야함

Ⅳ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신청하기

□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신청하기 * 최대 5명까지 입력 가능

① [목록]을 클릭하여 기등록한 담당자를 선택하거나 담당자 현황을 등록한 후 선택(최대 5명까지 입력 가능)

② 신청인 정보 확인 후 “신청하기” 클릭 → 신고 완료

※ SMS 수신 체크시, 업무시간(9시~18시) 이외에도 문자가 갈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.

V 주요 질의사항 및 답변

Q-1	수주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?
A-1	신고 여부 파악을 위해 수주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. 동봉된 **'수주실적 없음'** 통보 서식을 작성 날인하여 **팩스로 송부** 해주시면 됩니다. **(별도 온라인 신고 필요 없음)** * 서식은 '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(www.etis.or.kr) - 알림 - 공지 - 2024년도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신고 요청 안내'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

Q-2	수주실적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?
A-2	수주실적 신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. 다만, 추후 수주실적 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실 때 발급 부수 당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.

Q-3	수주금액이 높으면 회비가 올라가나요?
A-3	아닙니다. 회비는 하반기에 신고하시는 매출실적 신고와 연계되며, **수주실적 신고는 회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**

Q-4	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-4	**반드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.** 현재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은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함에 따라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수주실적 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.

Q-5	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A-5	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. - (계약시작일) 계약일자나 착수일자로 입력 - (계약종료일) 계약종료일이 '계약일로부터 OO일 후' 인 경우, 해당 날짜를 계산하여 입력하고, '준공시' 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해 연말 (2024년 12월 31일)로 입력

Q-6	임시저장이나 추가입력은 할 수 없나요?
A-6	임시저장이나 추가입력은 할 수 없습니다. 신고시스템 개편으로 신고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**한 번에 한 건씩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** 충분히 검토하시고 입력이 완료됐을 때 “신청하기”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진행 사항은 My 문서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주의 ‘신청하기’ 버튼 클릭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. 자료신청 후 수정은 수주실적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Q-7	수주실적 신고와 매출실적 신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?
A-7	**‘수주실적 신고’**는 전년도에 신규 계약한 실적을, 계약 건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. **‘매출실적 신고’**는 계약 시점과 상관 없이 전년도에 수령한 기성 금(매출액)의 총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. (계약 건별 신고 아님). 참고로 매출실적은 매년 6월 ~ 9월에 신고하며, 신고된 매출액은 통상 회비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

Q-8	2023년도에 계약 후 2024년도에 준공한 건도 신고해야 하나요?
A-8	신고하셔도 됩니다. 다만, 수주실적은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구분되므로, 2023년도에 계약 후 2024년도에 준공한 건은, 2023년도 수주 실적에 해당하여 올해 신고 및 집계 대상이 아닙니다. * 계약종료일은 실적 신고의 기준이 아님

Q-9	차수별로 계약한 사업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?
A-9	**총차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**이나, 신고자가 필요시 요구하는 경우 차수별 신고도 허용하고 있습니다. 다만, 계약실적을 차수별로 신고하고 추후 준공시 총차로 변경신고를 원할 경우 기존에 차수별로 신고된 내용에 대한 **삭제 공문을 제출**해 주셔야 합니다.

Q-10	시설물유형 항목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?
A-10	해당 용역의 대표 시설물 유형 1개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. 과업을 수행하는 대상물의 상위 개념인 시설물을 선택합니다. 적용할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시설물의 기타를 선택합니다. ※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(www.etis.or.kr) 민원-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* 시설물 유형 추가를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(www.etis.or.kr) 민원-묻고답하기 (기능개선) 항목을 통해 추가 요청하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추가 예정이며 추후 변경 가능

Q-11	사업유형 항목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?
A-11	사업유형는 과업의 주요 사업유형을 입력하는 것이며, 필수 입력사항은 아닙니다. 필요시 각 사업유형별로 금액 입력이 가능하며, 전체 합계금액이 총 계약금액(당사지분금액)을 넘을 수 없습니다. 입력하실 땐 과업지시서나 실적증명서를 바탕으로 입력해야하며, **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실적증명서, 과업지시서 등)을 첨부해야만 실적 등록이 가능합니다.** ※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(www.etis.or.kr) 민원-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* 사업유형 추가를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(www.etis.or.kr) 민원-묻고답하기 (기능개선) 항목을 통해 추가 요청하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추가 예정이며 추후 변경 가능

Q-12	사업개요 항목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?
A-12	사업개요는 과업의 주요 내용(상세 규격, 규모 등)을 입력하는 것이며, 필수 입력사항은 아닙니다. 통상 사업개요는 추후 공공 발주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준공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활용됩니다. 따라서, 준공실적 신고하실 때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. 입력하실 땐 과업지시서나 실적증명서를 바탕으로 입력해야 하며, **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실적증명서, 과업지시서 등)를 첨부해야만 실적 등록이 가능합니다.** ※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(www.etis.or.kr) 민원-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* 사업개요 추가를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(www.etis.or.kr) 민원-묻고답하기 (기능개선) 항목을 통해 추가 요청하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추가 예정이며 추후 변경 가능

Q-13	하도급 실적도 인정 가능한가요?
A-13	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. 다만, 참여하실 사업의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Q-14	게시된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상이한 경우, 계약서의 내용대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?
A-14	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1. 나라장터 계약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으로 신고 완료 후, 변경 신고하는 방법 2. 직접 입력 방법으로, 처음부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.

Q-15	수주실적 신고는 신고기간(매년 2월)에만 가능한가요?
A-15	**수주실적 신고는 상시 신고가 가능**합니다.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이후, 계약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, 전년도에 대한 업계 통계산출 및 상위 100개사의 실적 순위를 공표하고 위해, 매년 전년도 실적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 상시신고 및 집중 신고기간에 신고된 실적은 모두 순위 공표시에 참고됩니다. 추가로, 신고된 실적은 PQ, 적격심사, 발주청의 업체 추천 시 활용되며,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주실적확인서와 준공실적확인서를 상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Q-16	온라인 수주 실적 신고 시 오류가 납니다. 원인이 무엇인가요?
A-16	1. 첨부 파일명 길거나 특수 문자가 포함된 경우 2. 용역명(계약명)에 특수 문자가 포함된 경우 3. 금액에 임의로 쉼표(,)를 넣는 경우 ※ 금액은 반드시 숫자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

Q-17	기신고된 실적(등록까지 완료된 실적)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?
A-17	등록 처리된 실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'수주실적 변경신고'를 통해 가능하며, **한 번에 한 건씩만** 변경신고 가능합니다. (수주실적 변경신고방법 참고) - (신고방법)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→ 로그인 → 민원 → 실적관리 → 수주실적 → 변경신고 → 변경할 실적을 검색 → '변경' 선택 →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입력 → 신고하기 클릭 - (제출서류)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가능한 서류(계약서, 실적증명서 등)를 온라인 첨부 **(※우편송부 불필요)**

Q-18	증빙서류의 첨부 방법도 온라인으로 변경되었는데, 그럼 우편 송부는 안해도 되는건가요?
A-18	네, 증빙서류의 **우편 송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**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더라도,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. 온라인 첨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. 첨부파일은 5MB이하의 PDF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며, 최대 2개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. 1. 계약실적의 경우 : 계약서 ※ 모든 문서는 계약 당사자간 직인이 날인되어야 인정 2. 준공실적의 경우 :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입니다. ※ 발주자가 확인한 직인이 날인되어야 인정 3. 추가 제출 필요 - 공동수주 : **당사지분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**(공동수급협정서, 계약이행보증서 등) 필수 추가제출 - 국외 수주계약 : USD 기준으로 계약금액 입력 및 원화 **환율표** 추가 제출 - 사업유형, 사업개요 입력한 경우 : 과업지시서, 실적증명서 등으로 **신고 내용이 확인되는 서류** 추가 제출

Q-19	미신청탭에 있는건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?
A-19	보유한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판단되는 건은 모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미신청탭은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계약정보가 게시됩니다. 이중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 실적을 신청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해당 목록에 확인이 되지 않는 계약 건은 “계약번호로 가져오기”에서 조회하여 계약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실적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건은 “취소”를 눌러 목록에서 제외시킬수 있고, 이 현황은 취소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